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임 희 연(서울중부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공개재분류’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에 비해 방대한 대상량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모두 같은 상황일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재분류 업무는 기관의 성격과 상관없이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발표자도 매년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많은 양의 공개재분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다. 여러 방안 중 특히 비공개 6호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 포함 기록물에 대한 상한 기간 지정은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은 기록관 단계에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공개재분류 사업 시 재분류 후 비공개 6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이 약 90%였던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업무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과 생산단계부터 공개결정 및 확정과 이관 전 공개재분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생산시스템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한다. 그렇다면 기록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재분류에 대한 업무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공개재분류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기관의 처리과에 부담을 가중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기록물의 생산부서와 생산자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시기와 비공개 정보 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기록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공개재분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공개재분류는 소장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에서도 모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목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즉, 비공개기록물이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재분류 실시 후 비공개 기록물이 공개로 전환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은 기관 내 홈페이지에 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재분류 이전과 같이 제목만 공개한다. 그렇다면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공개재분류 이전과 이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온라인 사본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문을 봐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의 대상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카이브 단계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공개재분류를 하는 것보다, 발표 내용에 있는 ‘기획 공개재분류’를 확대하고 기술(description)에 기반한 소장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공개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